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지역구분모집으로 임용된 법원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지역 소재 법원의 사법행정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균형 있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전보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안 제53조제4항)

4.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769